

서울특별시성북구고시 제2016 - 호

## 길음3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사업시행변경인가 고시

서울특별시 고시 제2006-357호(2006.10.19.)로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및 촉진계획 결정되고, 서고시 제2009-111호(2009.3.19.), 서고시 제2011-143호(2011.6.02.), 서고시 제2012-307호(2012.11.15.)로 촉진계획 변경결정 고시되어 2009.11.27. 조합설립인가 및 성북구 고시 제2012-89호(2012.6.14.) 사업시행인가, 2013.4.17. 사업시행변경(경미한)인가, 성북구 고시 제2015-25호(2015.2.23.)로 관리처분인가된 성북구 정릉1동 192번지 일대 길음3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과 관련하여,

『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』 제28조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변경(중대한)인가 처리하고, 같은법 제28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.

2016년 1월 21 일

성 북 구 청 장

가. 사업의 종류 및 명칭 : 길음3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

나.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

(1) 위치 :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동 192번지 일대

(2) 면적 : 19,488.00㎡

다.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

(1) 성명 : 길음3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조합장 오경석

(2) 주소 : 서울특별시 성북구 서경로 34, 2층

라. 정비사업의 시행기간 : 사업시행(변경)인가일로부터 60개월

마. 사업시행인가일 : 2012.06.14.

바. 건축계획 : 지하4층/지상24층, 5개동, 공동주택 399세대 및 부대복리시설

사. 주요 변경내역

- 2015.02.23 관리처분인가시 정비사업비 추산액 반영한 정비사업비 변경

- 평형별 단위세대 평면개선 및 공급면적 변경 등 건축계획 변경

- 주택규모별 공급세대수 변경 및 부대복리시설 계획변경 등

※ 관계서류는 서울특별시 성북구청 주거정비과(☎2241-2854)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.